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준공예정에 따라 이용료, 이용시간 등을 규정하고, 시설의 위탁운영 및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추가·신설하여 체육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관리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와 이용료의 구분을 명확히 함 (안 제2조제7호, 제8호, 안제9조제2항)
- 나.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9호, 제10호)
- 다. 신축 복합스포츠센터의 이용료, 이용시간 등 신설 (안 별표1~별표3)
- 라.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관련 규정 신설 (안 제18조)
- 마.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혜택 대상추가 (안 별표3, 별표7)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이용료”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9조의 제목 “(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사용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20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 제목 “(체육시설 수탁자의 책무)”를 “(수탁자의 책무)”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의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1]

체육시설의 범위(제2조 관련)

1. 전문체육시설

명 칭	위 치	기 능
박정희체육관	구미시 박정희로 375-19 (광평동)	농구, 배구, 각종행사
복합스포츠센터	구미시 박정희로 375-19 (광평동)	볼링, 배구, 농구 등, 각종행사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2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육상, 축구, 각종행사
복합체육시설	구미시 박정희로 375-20 (광평동)	인라인롤러, 씨름, 농구, 배드민턴, 체육회관 회의실 등
금오테니스장	구미시 산책길 105 (남통동)	테니스 등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구미시 구포동 1191번지	축구, 정구, 테니스, 농구, 족구, 각종행사

2. 생활체육시설

명 칭	종 류 (종 목)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관할 읍·면·동장이 관리하는 실내·외 체육시설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평 일		토 · 일 · 공휴일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박정희 체육관	주경기장	100,000원	300,000원	150,000원	400,000원
	보조경기장	50,000원	100,000원	80,000원	200,000원
복합 스포츠센터	다목적경기장	80,000원	200,000원	120,000원	300,000원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트랙	60,000원	100,000원	90,000원	200,000원
	필드	150,000원	250,000원	250,000원	350,000원
	행사	600,000원		900,000원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트랙	40,000원	80,000원	65,000원	160,000원
	필드	80,000원	160,000원	160,000원	240,000원
	행사	400,000원		500,000원	
복합 체육시설	인라인롤러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씨름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농구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다목적경기장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금오 테니스장	실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실내(1면 기준)	15,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 공원	클레이코트(1면 기준)		20,000원	30,000원	40,000원
	축구장	주간	60,000원	70,000원	80,000원
		조기 · 야간	80,000원	100,000원	120,000원
	풋살장	주간	40,000원	50,000원	50,000원
		조기 · 야간	50,000원	60,000원	70,000원

○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조기(06:00~09:00), 주간(09:00~18:00), 야간(18:00~23:00) 각 1회를 적용한다.
- 다만, 필드(축구경기), 테니스장(실내만 해당), 구포동 생활체육공원(클레이코트, 축구장, 풋살장)의 경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적용하고 구포동 생활체육공원의 야간 사용시간은 18:00~22:00으로 한다.
-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설치 등 준비하는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 및 체육시설의 정리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의 사용인원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행사 중 체육경기 외의 기준에만 적용한다.

- 1,000명 이상 ~ 2,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 2,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가산
- 5,000명 이상 : 사용료의 100분의 150 가산

○ 박정희체육관 보조경기장의 사용료는 1면당 기준으로 한다.

○ 복합체육시설의 농구장, 다목적경기장, 인라인롤러경기장은 개방시설로 별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제9조 관련)

구 분	기 준		평일	토·일·공휴일	비 고
금오테니스장	실 외	주간	4,000원	5,000원	○ 이용시간 - 1면, 1회, 1시간 적용 - 조기(06:00~09:00) - 주간(09:00~18:00) - 야간(18:00~22:00)
		조기·야간	6,000원	7,000원	
	실 내		12,000원	15,000원	
구포동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소프트)장]	실 외	주간	4,000원	5,000원	○ 주간·야간은 조명사용료 포함
		조기·야간	6,000원	7,000원	
	실 내		12,000원	15,000원	
복합 스포츠센터 (볼링장)	일 반		3,000원	3,200원	○ 이용방법 - 1레인, 1게임기준 - 운영(10:00~23:00)
	청소년		2,500원	2,800원	
	어린이		2,000원	2,500원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 신정, 설·추석연휴 - 근로자의 날
	대화료(1회)		1,000원		
	락커(1개월)		중 : 3,000원 / 대 : 5,000원		○ 락커 임대는 구비된 경우 적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 시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은 하나만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유공자와 그 배우자
2.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의상자(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보조자 1명 포함)
2.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활동 보조자 1명 포함)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
(구미시 다자녀 가정의 감면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발급 3개월 미만)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 3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등록포로
2.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7]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요율(제10조 관련)

구 분	대 상	감면 요율
면 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분의 100
	구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취약종목 선수 훈련	
	국가 또는 전국•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 대표선수 훈련	
감 경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100분의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을 위한 행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을 위한 행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구미시와의 협약에 따른 행사	
○ 감면 요율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만 적용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부속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 요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조(정의) ----- ----- ----. 1. ~ 6. (현행과 같음) 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u>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 8. “이용료”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u>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u> 9.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10.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부터 별표 6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 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으로 구분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단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체육시설 수탁자의 책무) (생략)	제19조(수탁자의 책무) (현행과 같음)
제19조 (생략)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시행일 2012.9.22]]

②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및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3.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노인의 여가·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17.12.29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2019.10.29]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 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기존 및 신축 체육시설 운영관리, 사용료·이용료 부과 및 감면대상 확대에 따른 세출·세입의 증·감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기존 및 신축 체육시설 운영관리, 사용료·이용료 부과 및 감면 대상 확대에 따른 전체 비용추계의 정확한 추산이 어려움.

4. 작성자

- 체육진흥과 지방방송통신주사 정성용 (☎480-4904)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지 대 근
	담 당	김 진 호
	담 당 자	정 성 용 (480-4904)